

2010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10. 10. 27(수) 07:30~10:00
- ② 회의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소식당
- ③ 출석임원
 - 이사장 정형근
 - 이사 김동만, 김영배, 김동환, 신현호, 박정희, 최영현, 이준순, 김규옥, 한문덕, 배종성, 조국현, 안소영, 장기태

④ 상정안건

- 제2회 정기이사회 부의안건 심의·의결
 - 의안 1호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2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3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4호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5호 일산병원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의안 6호 일산병원 회계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의안 7호 2011~2015 중장기 경영목표안
 - 의안 8호 연수원 부지 매입안
 - 의안 9호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의안 10호 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안
 - 의안 11호 가상계좌 수납 위탁기관 계약안
- ⑤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관리실, 인력관리실, 감사실, 자격징수실, 일산병원

2. 논의 결과(요지)

- 1 안건 제1호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 제2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 제3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제1호 안건 주요내용

-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의 의결('10.8.17)에 따른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조직·인력설계' 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10.8.31)된 '인력효율화' 계획 반영

② 제2호 안건 주요내용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등에 따른 노사정 합의('09.6.4)와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 의결('10.8.17) 사항 반영

③ 제2호 안건 주요내용

-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 임용되는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사정 합의('09.6.4)와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의 의결('10.8.17) 사항을 반영

④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1호 내지 의안3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 질문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징수통합이 10년전 부터 논의 되어서 심의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인력도 효율화 하고, 또 기관운영도 효율성 있게 운영해서 보험료를 절약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나온 안은 잘됐지만 걱정되는 것은 인원이 365명 감축이 되잖아요. 원래 몇명에서 통합되면서 몇 명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4대보험 징수통합을 통해서 조직·인력이 얼마나 효율성 있게 운영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5명이나 감축된다면 감축인원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그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안을 조금 더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휴직기간 3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너무 잘 하시는 거고요. 퇴직의 경우 퇴직금 가산 지급하는 것 등은 노동법에서 정한 것은 아니지요? 공단 재량에 따라서 해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리자면 양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 지금 답변을 드리지요.

기획조정실장 : 인력 365명은 '11년~'12년 2개 년도에 걸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징수통합으로 효율화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력 범위가 30%가량 효율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이미 발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환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국민연금 공단에서 전환되는 직원들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기존보다도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단 규정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장 : 부족한 것은 우리 ○○○ 이사님께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 감사 : 질문 겸 하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징수 통합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공단에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상임이사의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그 동안에 업무상임이사가 3개실을 맡았던 것이, 민원이 증대되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징수상임이사로 바뀌고 5개실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2년간 직접 살펴보니깐 급여상임이사께서 하는 4가지 업무, 이것도 상당히 양이 많아요. 온갖 회의 다 쫓아다니면서 과연 저런 바쁜 와중에 어떻게 소관부서를 관장하고 업무를 챙기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제 기억으로는 상임이사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징수 상임이사의 분장업무가 이렇게 많아지면 업무의 허점이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 감사때도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 : ○○○ 상임감사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마 제가 잘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유사한 공공기관과 비교해서도 저희 상임이사 한 분이 맡고 있는 인원수만 하더라도 3-4배 또는 5-6배 더 많고 업무량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통합을 계기로 이사 한 분을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만 그럴려면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 사정을 알고 여러 가지 개정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공단 관리감독기관에서도 의견을 살펴서 현재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지고, 정부의 위탁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가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임감사께서 죽 보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이사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사 :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4개 기관의 징수통합이 있을 때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에서 근로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원론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통합 과정에서 조직간 사소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단 하나도 근로조건이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 맞추다

보면 각 기관의 제일 좋은 조건만 뽑아서 배열하는 백화점식으로 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조건의 저하를 막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할 때 한 제도라도 근로조건이 저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도 있고 좋아지는 것도 있으면 총체적으로 봐서 근로조건이 좋아지면 되는 것이지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저하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조건의 저하로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볼 때 여기 퇴직금 가산지급 사유 등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를 정도로 골치아픈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협상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측면의 원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더라도, 그 중 한 가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휴가 중에서 여성의 보건휴가 일수를 변경하는 안에서 10개월 이상의 임신부에 대한 정기검진을 월 2회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른 부분들은 대충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 전체적인 부분은 징수통합을 하면서 노사정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징수통합준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개정하라고 공단에 통보된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개월 이상 임신부는 10개월 이상인 임신부에 대해 2일의 정기검진 휴가를 주는 겁니다.

○○○ 이사 : 말씀하신 것과 관해서 총량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근로조건 저하 없이 가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연금공단에서 오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어떤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등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10개월 이상이면 마지막달이거든요. 마지막달에는 병원에서도 이주일에 한번씩 오라고 합니다. 초음파도 그렇고요. 마지막달에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저출산고령화관련 정부발표도 있었지만 저는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이 첨가가 됐다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 이사 :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산달이 되어서 정기검진을 자주 가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요. 논리적으로 볼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0개월 이상 임신부라고 하면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이사 : 모자보건법에서는 출산 후 6개월까지를 임신부로 보고 있습니다.

○○○ 이사 : 출산 후 6개월까지를 임신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 후 6개월까지는 우리가 산전휴가를 90일로 보게 되면 산후 45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면 나머지 135일이 나옵니다. 이 135일 동안 여러 가지 검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출산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검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3번도 필요하면 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모자보건법처럼 2회로 해야지 이것이 왜 2일로 되어서 휴가라는 개념으로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2회 이상이란 조항이 없더라도 근무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누구든지 이것은 회사가 안 해 줄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월 2회로 해야죠. 검진받는데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검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 2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 하느냐 하면, 이런 사유를 정

상적으로 이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꼭 이런 것을 휴일의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찾아 쓰지 않으면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결정된 것을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휴일의 개념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 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점을 분명히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 ○○○ 이사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운용과정에서 이것이 휴일 개념으로 오용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관찰한 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이사 : 육아휴직 문제인데요. 77페이지요.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의 경우 양성평등의 시대인데 오히려 남성들이 더 역할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남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가 동등하게. 공단에 근무하는 남성직원들의 아내들은 여기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남성들도 같은기준이 적용됐으면 좋겠고요. 3년으로 확대해도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출산을 공단이 앞장서서 극복하는데 좋은 사례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사 : 휴직기간 3년은 노동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도 1년쯤 육아휴직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지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본 여성들의 고충을 아셔야 되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 이사 : 저는 이것을 개정하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 하거나 또 승진제도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3년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 이사 : 그렇지요. 그런 내용은 괜찮지요.

○○○ 이사 : 먼저 말씀하신 상임이사 증원문제를 이사회 결의로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지 하는 것 하고, 89쪽에 보니까 보수 체계가 다르다고 하는데 보수체계가 다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 공단 임직원의 보수가 적게 산정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공단 임직원들의 보수체계가 다른데 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걸 중장기적으로 그에 맞춰서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사장 : 상세한 것은 기초실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심평원 보다도 봉급이 적습니다. 봉급체계가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면 저의 경우는 때로는 성과금만 계산하면 이사보다도 총액이 적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체계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재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도도 받고 규제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업무의 질이나 양에 있어서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겁니다. 직원이 12,000명이 넘는 공공기관 이사장인 제가 봉급이 700만원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 산하 공기업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것을 이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 봉급이 근로복지공단 보다는 조금 높지만 연금보다는 모든 면에서 불리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고, 연금에서 전환되는

인력은 호봉을 더 가산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보수체계는 정부 차원에서 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세부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 복지부 산하기관중 심평원, 국민연금, 우리 공단 중에는 공단이 가장 적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통합되는 3개 기관 중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일 많고, 근로복지공단은 공단보다 조금 못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각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각 직급별로 계산을 봐야 됩니다. 상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사 : 그냥 제안드리는 건데요. 정부산하 통합합한 기관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통합, 또 환경부에도 있는데 거기는 딜로이트라는 자문기관에다 맡겨서 이런 직급, 인건비 등에 대한 안을 다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⑤ 논의 결론

제1호 내지 제3호 안건 원안의결

2 안건 제4호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제4호 안건 주요내용

- 2010.7.1부터 시행한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의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반영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 4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들 : 없습니다.

③ 논의 결론

제4호 안건 원안의결

3 안건 제5호 일산병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안건 제6호 일산병원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제5호 안건 주요내용

- 일산병원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등 반영

② 제6호 안건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 증권투자신탁업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③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 5호 내지 6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 의안5호 안건중 육아휴직기간 관련해서는 아까와 다르네요. 병원에는 여직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얘기도 있고 한데, 왜 공단하고 달리 적용을 했는가 의문이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 3년이라는 부분은 징수통합을 하면서 3개 기관을 통합하다 보니까 근로조건 저하문제 때문에 징수통합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이고 법상 기간은 아닙니다. 일산병원은 일단 법률에 맞춰서 1년으로 했는데, 3년으로 하게되면 일산병원 내부사정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사 : 자금의 차입 조항에서 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그걸로만 구분할 게 아니라 액수로는 구분이 안 되나요? 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되는지 하고요. 액수는 상관없는지요.

기획조정실장 : 그 부분은 법상에 맞춰서 한 겁니다.

○○○ 이사 : 맞춰서 한 겁니까? 그 다음에 회계업무 전산화에 따른 것은 정부 투자기관이 전산화 자료의 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면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공공기관인데 이것을 삭제해도 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 그 부분은 이미 사문화 됐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④ 논의 결론

제5호 내지 6호 안전 원안의결

4 안전 제7호 2011~2015 중장기 경영목표안

① 제7호 안전 주요내용

-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 전략목표 조정 : ('09년) 5대 전략목표 → ('10년) 4대 전략목표
- 전략과제 조정 : ('09년) 27개 전략과제 → ('10년) 16개 전략과제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 7호 안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 이사장님께서 지난 국정감사때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중의 하나가 결국 의료비의 지속적인 확대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아마도 총액계약제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원론적인 수준에 대해서만 여기에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을 하겠다던지 하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 가능성과 협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올해도 수가 협상을 잘 해서 의협 말고는 무난하게 협상이 진행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보가 있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알 수 있는데, 이런 정보 차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되지만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그 동안의 조사결과라던가 연구실적이 있으면 그게 잘 된 것이든 잘못 된 것이든 공개가 되면서 학문적인 비판을 받고 그런 것들이 협상의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경실련에서 식대부분에 관한 것들을 조사해서 1년에 3천억 정도의 부당이득이 갔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의료기관쪽에서는 그게 56개 해서 전국에 2만개가 넘는 것중에 일부 아니냐. 그나마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보호법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냈고요. 만약에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일부 사립병원들도 우리는 이렇게 계약하고 있다던지 계약서가 공개가 되면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으면서 그건 다 잘못 된거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만 적자를 보고 있다면 당연히 올려주어야

되는데 올려주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해도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동안의 이런 많은 정보도 때로는 필요할 때에는 국민들한테 공개를 함으로써 진짜 각 의료기관이 적자에 허덕이는지, 아니면 어느 진료과는 좀 어려운지 하는 점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런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연구자료가 됐든 어떤 자료가 됐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듯 싶습니다.

이사장 : 예. 그것은 저희 관리감독기관인 복지부 ○과장님께서 와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총액계약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시행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의 총액계약제를 안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총액계약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잘된 제도라고 하면서도 내부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이 상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1조 8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해서 약 5,300억 절약하면 적자 규모가 1조 3,000억 정도가 될텐데, 내년에는 그것이 2조 그 다음에는 3조, 5조 등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총액계약제는 좋은 좋지안든 세계 각국의 예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1차 의료에 있어서 그러한 주치의제도를 의협하고 논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DRG부터 하고 그 다음에 총액계약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정책기관이 아니고 건강보험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상신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그 중에 하나 총액 계약제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의료계에 여러 가지 수가를 아주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총액계약제가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산정하면서 여기에는 행위별 수가도 일부 가미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여러 문제를 잘 해결 하는 것으로 연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정보접근이 안 되고 연구원 등에서 여러 과제들 연구한 것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전한 비판이나 건설적인 제안이 차단된다는 것을 학계에서도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특히 식대문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도 비로소 알았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800병상 되는 일산병원의 식대운영에 대해 제가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부터 신이사님께 참고로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이런 식대문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공유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 중장기 경영목표도 아주 잘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밖에서 들은 바를 하나 말씀드리면, 왜 공단 위원회에는 소비자측에서만 다 들어가 있고, 병원 즉 공급자측은 아무도 없느냐 이런 반발과 함께 무슨 토론회나 정책자문할 때 의사협회를 제외시킨다는 이런 불만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급자측의 의견도 수렴해 주는 적극적인 방향은 어떨지 하구요. 그 다음에 이춘식 의원실에서 보험재정건전성 관련 토론회를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 아납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우리 나름대로 개최해서 도출안을 정부에 낼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급자단체, 특히 의협에서 재정위원회에 왜 공급자단체는 참여시키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항의방문도 하고 수가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불만을 제기합니다만 우리 공단은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공공기관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지만 원래 기본적인 성격은 가입자단체인데, 공급자단체와 재정문제 등 내부정보를 공유하며 협의해 나가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설계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가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누차 의협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공동연구하자고 제의했는데 병협은 좋다고 하지만 의협은 줄기 차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가문제 라던지 여러 가지 공급자의 제도문제는 저희들만으로서는 안 되고 공급자와 저희들, 물론 보건복지부, 정부기관과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이나 합의가 되어야만 이것이 시행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밖의 재정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이사 :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경영계획은 사전에 각 단체에서 정책제안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따로 나눠주신 자료 55페이지 중간에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모색과 정책지원이라는 내용의 두 번째 보면 영리병원 도입, 민간보험과 공공의 역할 등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연구자료 생성과 정부정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리병원이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 등에는 일부 허용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고 저희들 비롯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공식적인 문건에 도입을 마치 된 것처럼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번 국감때 보듯이 제약회사들 특히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공급 거부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요. 약가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20%미만으로 다운시켜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거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악화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 국가 차원의 제약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저는 그 중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15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포함되기는 어렵겠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꿈같은 얘기 일 수 있는데요.

이사장 : 앞으로 특별히 중요하거나 특히 양이 많은 자료들은 미리 이사님들께 드려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병원은 공공의료충분히 확대가 되고 보장성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만 언젠가 달성이 될 때 영리병원도 선진국과 같이 어느 정도 도입이 되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마치 도입된 것 같이 그렇게 오해가 되었다면 저희 잘못이고, 영리병원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때로는 반박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표현에 유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약 값은 선진국도 5% 내외로 하고 있고 심지어 영국 같은 나라는 제약의 이익이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2%로 제한하는 등, 약을 공공재로 생각을 하고 제한하는 게 유럽의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약 값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장의 평균실거래가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해서 약 값이 너무 떨어져서 일부 신약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형편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한다면 다소 부작용이 있지만 약값을 적정하게 컨테인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비판과 논의가 많겠습니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 이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구요.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기적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몇 년전에 농어민들 쌀직불금 문제가지고 엄청나게 혼란을 겪었고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전면적인 조사까지도 다 받았었고 나름대로 거기에 불이익, 예를 들어 A번지가 직불제 위반을 했다 하면 패널티가 5년간 아무것도 정부 보조금의 성격은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패널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전에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심평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1%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시고 또 이사장님께서 전혀 그 관계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언론보도나 시민단체들의 보고자료에 보면 부당 허위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고 금액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 쌀직불제 문제에서의 그런 고충을 겪듯이 이런 부분에서 재정건전성의 문제와 또는 도덕성 이런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장기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계획이

니까요.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 ○○○ 이사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쉽게 표현드리면 심평원은 어떤 의료의 보편적인 기준 등을 오버했을 경우에 이것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보험자로서 허위부정청구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평원의 그런 심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합시다만 미미합니다. 일본은 한 80%정도 보험자가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해결하고 전문성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전문인력을 그 동안 많이 뽑고, BMS라는 허위부정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복지부로 부터 허가를 받아서 연구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 중점적인 과제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 경영목표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 있는데요. 재정 관련해서 경영목표에 보면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2011년도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기재부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수입으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는게 원칙이고, 대부분 건강보험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산제 도입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정산제 도입관련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저희도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는 정산제 도입이 되면 급여지출 절감노력이라든지 수입확충 노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또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이런 재정소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지불제도 개편이라든지 약제비 절감, 수가계약 개선 이런 지출

효율화 노력 같은 것은 책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징수강화 노력을 통한 수입확충 노력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정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보험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이사회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장기요양기관을 운용하는 것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상황을 봤을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향후 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8년도 7월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고지원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추세로 봤을 때 가입자 수 증가라든지 재정소요가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렇게 신규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해서 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기존 민간설립 장기요양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먼저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사장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건강보험제도에 14%, 담배증진기금 6%인데 이게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이게 국가에서 의무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인데 정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문제제기 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연대해서 사회연대로 책임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보험제도는 국가가 전부 조세로 하는 나라가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완전한 사회보장으로서 컨트리뷰션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에서 대개 30% 내지 50% 정도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진국도 너니없이 재정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립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이를 그대로 순수한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자구노력도 하고 지불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만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지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방치할 수만 없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뼈아픈 자구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국민들이 부담을 얼마나 하느냐. 수가를 얼마나 올리느냐. 정부는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특히 담배증진기금은 2011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재부가 앞으로도 이것을 외국과 같이 주세나 또 다른 세금수입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단지 처음 시행을 할 때 충분한 준비를 안 하고 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시장 경제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가시설은 놀랍게도 15,000개가 넘습니다. 누차 제도개선을 건의 드렸습시다만 제도개선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난립해서 오히려 시장질서에 큰 교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상당 수에 달하는 요양기관이 부정허위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재가시설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문제는 친족 친척들, 친인척 형제자매들을 허용했는데 그 비율이 25%에서 40%까지 올라가고 이것은 허위청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시설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실패한 이유는 시장에 맡겼기 때문이 이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8%밖에 안 됩니다. 싱가포르는 80%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즉 구청이나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요양기관은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런 요양기관에 들어 갈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케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 정도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양지해서 이런 문제도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사 : 주세를 말씀하셨잖아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부담이 계속 늘어나도록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왔는데 이런 지원이 없어진다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복권 같은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나 만들든지 그쪽에서 지분을 얻어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주세관련 해서는 참 좋은 제안을 하셨거든요. 이런 큰 틀에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사 : 여러 이사님들이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공단 계획에도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체적인 계획이 담겨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국고지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질문하시고 의견을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사회가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규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국고지원 20%를 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연유를 보면 이것은 정부가 전체 재정에서 한 20% 정도를 책임지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것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예상 수입의 20%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 수입을 축소해서 재정의 20%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게 저는

정부가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국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후정산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큰 틀의 차원에서 이것을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국고지원을 종료시키면 보험료를 20%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대안이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지만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 국고지원을 상당히 하고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요. 기타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나 계획들은 우리 공단에서 말씀하시는 방향과 함께 정부가 전달체계 확립이라던지 지불제도와 부과체계 개편, 이런 큰 틀의 개편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는데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사 : 건보재정에 관한 국고지원 문제가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복지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험예상 수입액과 관련한 원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보험료가 결정되는 시기하고 또한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나름대로 국회에 제출되고 하는 예산편성과 심의과정과의 불일치 문제 때문에 항상 차질을 빚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면 정산문제라던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재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기요양재정이 지금 형편에는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재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직영시설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장기요양에 대해서 직영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수익사업으로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만 지난해에 참 어렵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입법적 의사결정을 거쳐서 또 정부의 개정법률에 대한 공포 시행을 거쳐서 2010년도부터 착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자이면서 장기요양에 대한 관리운영기관인 공단이 혹시 이러한 시설운영을 재가와 함께 시설에 대한 직영을 해보려는게 포괄수가제이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엇이 적절한 수가이냐에 대해서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이 있었지만 현재에 시설이든지 재가에 있어서 이게 적절한지 여부가 누구도 쉽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좌우간 직영시설을 운영해보면서 적절한 수가과약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확립을 해보자는 그런 목적에서 직영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매년 공단과 복지부와 관련기관과의 수가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재정절감의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 사회복지부문에 회계기관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08년, 09년도에 이것을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받아 보니까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치부분들이 전혀 근거도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참 어렵사리 직접 자체조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라던가 이런게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후생성에서 조사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 또 각 기관들도 재무제표를 공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취약한 형편이고 직영시설 운영이 어떤 업무확장이라던지 조직확대나 이런 관점에서 전혀 우려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법상

목적에서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절감을 위한 것이고, 노인 인구수의 확대에 따라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 직영시설을 빨리 추진하게 되면 그야말로 민간 베이스 차원에서 아주 엄격하게 운용해서 적절한 수가산정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사 : 다른 이사회 때와 달리 오늘은 한마디 하는데 굉장히 눈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건이 11개나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참여한 모든 공단 이사회 중에서 오늘 안건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도 이사님들이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고, 저도 많이 준비해 왔지만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차후에는 조금 안건을 줄여서 좋은 말씀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충분히 말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 모처럼 열리는 정기이사회여서 안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③ 논의 결론

제7호 안건 원안의결

4 안건 제8호 연수원 부지매입안

안건 제9호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① 제8호 안건 주요내용

- 매입대상 총 48필지 중 시유지 42필지(173,990㎡) 우선 매입

② 제9호 안건 주요내용

-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과 연수원건립 토지매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③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 8호 내지 의안 9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 연수원은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요. 다만 간병 서비스제도화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YWCA가 20년전부터 간병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교육을 20여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수렴이나 시범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 예, 알겠습니다.

○○○ 이사 : 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각 기관이 연수원을 지어놓고 가동률이 너무 낮아서 외부사람 유치한다고 돌아다닐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이 된다면 연수원을 충분히 가동시켜서 교육훈련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④ 논의 결론

제8호 내지 제9호 안건 원안의결

5 안건 제10호 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안

① 제 10호 안건 주요내용

- 내용연수 경과 전산서버 등 취득가액 5천만원 이상 유동자산 (총 28종) 불용결정 및 처분
- 경인지역본부 사옥 부속설비(냉온수기) 불용처분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 10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들 : 없습니다.

③ 논의 결론

제10호 안건 원안의결

6 안건 제11호 가상계좌 수납 위탁기관 계약안

① 제 11호 안건 주요내용

- 신규계약 : 우리 · 신한 · 광주 · 경남 · 대구 · 부산 · 전북은행
- 재계약 : 국민 · 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고정식 추가)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 11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 예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농협하고 우체국이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로 수납대행이

많이 가는겁니다. 가상계좌 신규계약 은행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KBS의 경우 TV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해서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수도료 등에 우리가 받을 수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③ 논의 결론

제11호 안건 원안의결